

민주화운동 관련 과거청산의 조건과 현실³⁸⁾

정 호 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1. 과거청산에 있어서 민주화운동의 의미

이 글은 한국에서 과거청산 프로그램이 추진된 과정과 정치·사회적 지형의 조건 및 현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및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희연 선생님은 “민주화운동”에 다른 누구 못지 않게 많은 역할을 하였고, 현재에도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는 만큼 발표문에 참 많은 애기와 내용들을 담고 계신다. 선생님은 과거청산을 현 국민의 정부 하에서 제정되었던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9. 12. 2, 이하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의문사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1999. 12. 2)],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4. 30)],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2001. 6. 28)]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과거청산에 대한 법률들은 이외에도 해방 및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사건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런 법률들과 이에 기초한 기구들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난 역사에 대한 재평가 및 정리 그리고 보다 진실에 가까운 사실들을 밝혀내는 작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선생님은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과거청산이 민간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전진하였고, 국가가 이 사업들을 끌어가는 주체이며, 과거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많은 사람들도 역

38) 본 토론 내용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입장이 아니라, 토론자 개인의 입장임을 먼저 밝힙니다.



시 국가의 의무사항임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적어도 이 법률과 기구들이 제정되고 구성될 당시에는 과거의 사건들을 다르게 파악할 수 있는 정치·사회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실현할 조건과 한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공유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희연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시적 규정성'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과 기구들에 입각한 다양한 사업들은 과거청산이라는 개념 범주로 볼 때는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조건과 진행과정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서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법이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률 제정하던 당시의 예측 가능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많은 신청인들의 숫자와 각 사건과 관련자에 대한 판정결과가 현실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법률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용어들의 규정과 범위 및 합의 등에 관한 기준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의 문제, 비록 신청인의 접수는 개인별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각 사건들이 지닌 진상과 평가 및 심사기준,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서 개별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복잡하고, 복합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정의하고 판단하는 문제는 독립된 과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법이 제정되던 당시의 지형도와 현재의 정치·사회적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은 현실의 정치·사회적 지평이 과거청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이는 보다면 과거의 사례들인 4월혁명, 부마민주화운동,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과는 다른 조건과 차원의 문제이다.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보상법은 과거대상으로 구분되기 어려운 여전히 진행중인 현재의 사안들까지 다루고 있기에 더욱 민감하다.

2. 이론적 차원의 민주화운동과 과거청산의 현실 대상으로서의 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은 여러 가지로 개념화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과거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역시 끊임없이 현재의 정치·사회적 관계 속에서 재구성된다는 입장이다. 사건으로서의 과거는 실체를 갖는다고 할 수 있지만, 청산되어야 할 과거는 그렇지 않은 과거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이 변해가는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를 흔히 보편적 기준 혹은 객관적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과거의 진실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은 과거청산이 갖는 본질적 어려움(정근식, 2002: 12-13)”이다.

첫째, 과거청산과 관련된 법들의 적용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상적 지향성을 갖는 정치·사회집단들에게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합의에 기초한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객관성을 보장받는 것이며, 합의에 기초한 보편성을 갖게 되는가라는 점은 항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즉 가장 흔히 그리고 쉽게 하는 비판이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역으로 어떤 것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할 때 객관성과 보편성이 담보되는가에 대한 일련의 정황과 법의 능력을 고려하여 설득력 있고 타당성을 갖춘 답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모셔놓고 공청회 혹은 간담회를 하고, 상반된 입장을 갖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대비시켜주는 것이 꼭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인가? 이 과정을 밟아 판정을 하게 되면, 공정하고 정당한 판정임이 부인되지 않는가?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게 되는 것이다. 이는 도덕과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선생님이 과거청산을 위한 법제정과 그것의 시행이 바로 계급적·사회적 관계들의 반영이라고 지적하셨던 것처럼, 실제 이 법이 적용 및 작동하는 과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민주화운동에 대한 규정과 법률의 적용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배제의 방식’과 ‘포함의 방식’은 동전의 양면으로 그다지 큰 차이를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져온 성과와 결과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엄격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서만이 아니라, 흔히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강경선, 2002: 18). 엄격성은 최소주의적 해석이라는 지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입장을 취하든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점은 최소주의 입장에서 민주화는



동에 대한 개념을 선택할 밖에 없는 외재적 힘으로 작용한다.

한국에서의 과거청산은 대다수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 적용의 측면에서 보면, 민주화운동을 쟁점으로 한 과거청산은 최대주의와 최소주의라는 스펙트럼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어떤 관점을 지닐 것인가를 인식의 전환 문제라고 간단하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단죄하였던 국보법이나 집시법 등이 그다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에 의거하여 위의 법에 의한 판정을 재평가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은 조희연 선생님의 주장처럼 이를 지지하는 세력이 여전히 현존하며, 현재의 정부가 갖는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에 의한 과거청산은 “법”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간의 갈등과 이견이 지닌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의해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이라는 법과 이에 근거한 기준에 의거하여 판정이 반드시 지향하고자 하는 과거청산의 방향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것은 법에 의거한 타협적 과거청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할 필요성이 그다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다양한 과거청산의 형태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통해 더 이상 과거의 일을 묻지 않게 되는 망각의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적어도 망각하지는 않을지라도 죄의식이나 역사적 부채의식 등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선별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집단과 역사를 특정한 기준을 통해 차별짓고, 부각시키는 과정이 있다. 과거청산을 하는 이유로 말 그대로 과거의 일을 정리하여 그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일차적인 수준과 유사한 비극과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존재 조건 및 이를 둘러싼 환경을 바꾸는 것, 아울러 현재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청산은 망각의 효과도 갖고 있으며, 신념과 정열에 기초한 열정과 희망을 현실화(?)하는 효과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과거청산은 한편으로는 역사화와 현재화, 그리고 미래화 과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망각의 과정이며, 특정성을 갖던 대상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민주화운동에 대한 과거청산을 주장하는 힘들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되고, 이해에 따라 차별화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과정

과 기념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명되었다. 이미 예견되었던 사실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한 과거청산 및 역사적 평가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된 것만은 확실하다. 또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도 다양하다. 단지 명예회복만으로 만족한 사람도 있고, 보상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둔 사람도 있었다. 문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판정 결과가 피하기 어려운 역기능, 정치·사회적 성공(?)을 위한 지름길로 사용되어지는 경향도 등장한다는 점이다. 역사청산, 즉 고통과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가, 진행형으로써 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준비를 하는 힘의 결속과 반성의 계기로 삼는가 등등에 대한 차별화가 점차 증대될 것이다.

3.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 및 지식인의 역할

조희연 선생님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최대주의적” 해석은 몇 가지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이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와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법률에 근거한 과거청산은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보장해줄 수 있는 근거와 기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으로 민주화운동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들은 더욱 복잡한 판단이 요구되며, 정치·사회적 여론의 소용돌이 속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활동은 있으나, 이에 대한 학술적 평가와 논리적 근거는 그다지 없다는 점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우리가 민주화운동에 대해 갖는 인식이 공유되었던 시기가 대부분 1980년대와 그 이전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라는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권력과 직접적인 충돌이 혹은 명백하게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던 지점에 대한 분야와 사건에 대해서만 관심이 모아져 있어서이다. 이는 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권위주의적 정권과 국민이라는 대치선이 보다 명백한 시기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를 강조하는데 있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최대주의적” 해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의 진척이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필요로 한다. 법에 근거를 둔 과거청산은 끊임 없이 보다 명쾌하고 확실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학술과 이론적 영역으로부터 그 자양분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를 위한 충실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리고 이러한 논리와 근거에 기초할 때, 조희연 선생님의 글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본 법의 한계와 문제점 혹은 다른 과거청산의 방법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민주화운동을 쟁점으로 하는 과거청산과 관련된 법들이 제정된 시점과 현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과 의문사진상규명법이 제정되는 데는 무엇보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고 성과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든든하게 뒤를 받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과거청산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 배경이 되었던 힘이 여전히 든든하며, 지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껏 민주화운동에 대한 판정이 논란을 빚을 때 나타난 반응 속에서 발견되는 우려되는 측면이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과거청산을 위한 조건이 몇 년 사이에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거청산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보다 명확하게 직시한 가운데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과거청산이 현재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충돌 혹은 대립되고 있는 법률들간의 정리 및 개정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 법률들은 또 다른 희생자를,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 또 다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임을 판정하게 된 근거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4. 국가폭력에 의한 일반적 피해자에 관한 문제

과거청산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 이것은 외적인 규정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기준과 근거를 생산하는 문제는 또 다른 과거의 연속이며, 과거 구도의 현재적 재현이다.

김동춘 선생님이 주장하는 과거청산: 과거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과 불법의 모든 사실을 정리하는 것,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세력을 단죄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잘못에 의해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 혹은 배상을 해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실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과서 등에 수록하는 일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김동춘, 2001: 9).

과거청산의 의미는 역사적 진행과 함께 변화하게 된다. '과거'는 현재의 지평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기 때문에, 역사의 중요한 매듭이 지어질 때마다 청산되어야 할 '과거'는 다르게 규정되고, '청산'의 의미도 달라진다. 청산되어야 할 '과거'는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는 보편적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과거의 진실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은 과거청산이 갖는 본질적 어려움이다(정근식, 2002: 12-13).